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96

2026. 3. 26.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13.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2026. 8. 31.)에 따라, 강남시니어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 ·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

  · 운영·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 노인복지관 6대 사업

  *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배치
강남시니어플라자	봉은사로332(역삼동)	지하3층~지상6층 (3,816.22㎡)	프로그램실, 상담실, 식당, 사무실

- 인력현황 : 25명(정규직 21명, 계약직 4명)

- 이용대상 : 관내 60세이상 어르신(월 26,740명)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9. 1. ~ 2031. 8. 30.)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828,039,000	37.3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강남구 2026년 예산사업설명서 (어르신복지과)_노인복지관 -근로기준법 제43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별표7)(제26조제1항 관련)
		제수당 연장근무수당	46,582,000	2.1	
		제수당 야간근로수당	-	0.0	
		제수당 휴일근로수당	-	0.0	
		제수당 연차수당	-	0.0	
		제수당 관리자수당	2,640,000	0.1	
		제수당 가족수당	10,350,000	0.5	
		제수당 정액급식비	35,280,000	1.6	
		제수당 명절휴가비	82,497,000	3.7	
		상여금	-	0.0	
		기타후생경비	7,600,000	0.3	
		퇴직충당금	86,580,000	3.9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32,176,000	1.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8,713,000	1.7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 고용보험료	13,873,000	0.6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산재보험료	6,767,000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4,228,000	0.2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1,195,325,000**	**53.8**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② 운영비(경비)	여비(국내/국외)		800,000	0.0	-자체 여비규정
	교 육 훈 련 비		-	0.0	
	임 차 료		-	0.0	
	우 편 통 신 비		6,132,000	0.3	-직접 소요비용 계산
	유 인 물 비		2,400,000	0.1	-직접 소요비용 계산
	소 모 품 비		36,600,000	1.6	-직접 소요비용 계산
	수 선 유 지 비		37,934,000	1.7	-직접 소요비용 계산
	차 량 유 지 비		3,720,000	0.2	-직접 소요비용 계산
	공공요금 및 제세		114,685,000	5.2	-직접 소요비용 계산
	기 타 경 비		96,052,000	4.3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소 계		**298,323,000**	13.4	
③ 사 업 비			727,019,000	32.7	-직접 소요비용 계산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2,220,667,000**	**100**	
수입원가	④ 입장료 · 이용료		0	0.0	
	⑤ 사용료		0	0.0	
	⑥ 기타수입	평생교육사업	576,040,000	68.1	-직접 소요비용 계산
		경로식당사업	203,472,000	24.1	-직접 소요비용 계산
		카페사업	66,000,000	7.8	-직접 소요비용 계산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845,512,000**	**100**	-
위탁비용(Ⓐ-Ⓑ)			**1,375,155,00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동의안 제출 배경 등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2026. 8. 31.)인 강남시니어플라자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형식 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제출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주요 사항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남시니어플라자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2011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등 노인복지관 6대 사업,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2026. 9. 1. ~ 2031. 8. 30.)으로 제출됨. 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본 시설에 대해서는 2026. 2. 3.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0.5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강남시니어플라자 회계·지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바 향후 시설 운영 시 관련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강남시니어플라자 회계·지도점검 결과]

연 도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3년	(운영분야) 고용노동부 5인이상 사업장 의무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채용자 및 휴가자도 의무교육 이수 필요, 수료 후 수료증 별도 관리 권고	권고
	(운영분야)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와 관련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및 시설시스템, 지자체시스템,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시스템 중 2곳이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을 포함시키지 않음	권고
	(운영분야)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출과 관련하여 3·4분기 회의시 '2022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계획 - 예산편성기준' 인당 12,000원을 초과 지출하지 않아야 하나 초과함. 2023년 회의수당 지출 시 2023년 기준 적용하여 지출할 것을 권고	권고
2024년	(회계분야) 물품거래 시 동일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거래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저렴하고 공급이 원활한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나, 단가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물품 구입을 추진하도록 권고함	권고
	(회계분야) 수의계약 진행 시 비교 견적서 미비 항목들이 발견됨 (견적서 날짜 누락, 유효기간 만료 등)	권고
2025년	(회계분야) 회계계정 처리 오류 - [2024년]시설장비유지비 목에서 지출한 냉난방기 설치비는 내용이 냉난방기 신규 구입 및 설치임에 따라 자산취득비 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예산항목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시설장비유지비 목에서 지출한 1층 캐노피 설치공사는 캐노피 신규 설치공사임에 따라 시설비 목에서 집행하는 것을 권고함	권고

(자료: 어르신복지과)

□ 종합 의견

○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 증대로 노인여가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 또한 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지역 내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강남시니어플라자의 안정적인 운영은 노인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에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재위탁 동의 여부는 본 시설의 기능과 역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요구 정도, 그동안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